

#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분산공유형 건설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속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0. 6. 24.)

1. 첨단건설재료 특성/성능 실험시설 구축 및 시설활용 사업
2. 첨단건설재료 기술 관련 학술 사업
3. 타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정보교환
4.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직

**제3조(부서)** 센터에는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7. 6. 13., 2010. 6. 24., 2011. 2. 8.)

- 1.~4. (삭제 2011. 2. 8.)

**제4조(업무분담)** (삭제 2011. 2. 8.)

**제5조(구성)** (삭제 2011. 2. 8.)

**제6조(임직원)**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신설 2007. 6. 13., 개정 2010. 6. 24., 2011. 2. 8., 2016. 8. 1.)

1. 센터장 1명
2. 부센터장 1명
-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센터의 필요에 따라 초빙교원, 전임연구원, 위촉연구원, 병력특례요원,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0. 6. 24.)
- ④ (삭제 2011. 2. 8.)

**제7조(임면,임기)** ① 센터장은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10. 1., 2011. 2. 8.)

- ②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10. 1., 2011. 2. 8., 2016. 8. 1.)
- ③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6. 13., 2011. 2. 8.)
- ④ (삭제 2011. 2. 8.)
- ⑤ 전임연구원 및 위촉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6. 13.)
- ⑥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6. 13.)
- ⑦ 실험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연구실 매니저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 ⑧ 센터에 직원, 병력특례요원, 조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07. 6. 13., 2010. 6. 24.)

**제8조(임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0. 6. 24., 2016. 8. 1.)

- ②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6. 13., 2010. 6. 24., 2016. 8. 1.)

③ (삭제 2011. 2. 8.)

④ 연구실 매니저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기자재관리(신고, 변경, 폐기 등) 제반 업무, 실험센터의 실험에 관한 일들을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관리한다.(개정 2020. 3. 1.)

### 제3장 (삭제 2011. 2. 8.)

제9조 (삭제 2011. 2. 8.)

제10조 (삭제 2011. 2. 8.)

제11조 (삭제 2011. 2. 8.)

제12조 (삭제 2011. 2. 8.)

###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 센터의 재정운용과 효율적, 행정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센터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1. 2. 8., 2016. 8. 1.)

②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간사는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6. 24.)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소집) 정기회의는 매년 초에,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6. 24.)

1. 예산과 결산
2. 사업계획
3. 규정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삭제 2011. 2. 8.)

제18조 (삭제 2011. 2. 8.)

제19조 (삭제 2011. 2. 8.)

제20조 (삭제 2011. 2. 8.)

제21조 (삭제 2011. 2. 8.)

제22조 (삭제 2011. 2. 8.)

### 제6장 (삭제 2011. 2. 8.)

제23조 (삭제 2011. 2. 8.)

제24조 (삭제 2011. 2. 8.)

제25조 (삭제 2011. 2. 8.)

제26조 (삭제 2011. 2. 8.)

제27조 (삭제 2011. 2. 8.)

## 제7장 (삭제 2011. 2. 8.)

제28조 (삭제 2011. 2. 8.)

제29조 (삭제 2011. 2. 8.)

제30조 (삭제 2011. 2. 8.)

제31조 (삭제 2011. 2. 8.)

제32조 (삭제 2011. 2. 8.)

제33조 (삭제 2011. 2. 8.)

## 제7장 재정

제34조(예산) 센터의 예산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 6. 24.)

1. KOCED 산업단의 지원금
2. 우리 대학교 지원금
3. 산업계의 연구보조금
4. 그 밖의 수입

제35조(예·결산과 사업) 센터장은 센터의 예산과 사업계획서, 결산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24.)

제36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제8장 운영

제37조(이용)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이용절차) 센터의 이용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39조(이용제한) 센터장이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